

#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3호 나목 내용중 “의회사무과”를 “의회사무국”  
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의회운영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가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나. <u>의회사무과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다. (생 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의회운영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나. <u>의회사무국</u>……………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다. (현행과 같음)</p>